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4-99

제출년월일: 2024. 8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하여 안전 및 품질을 향상하고,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있는 검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명칭 변경

현 행	개 정		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			
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	운영에 관한 조례」			

- 나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1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(안 제2조)
- 라. 위원회 구성 개정(안 제3조)
- 마.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(안 제10조~제1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조(기술자문위원회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7. 11. ~ 7. 3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 요청(수용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제3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- 2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
- 3.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4.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5.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6.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
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,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맡는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,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,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 위원회 위원
 - 2.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- 3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
 - 가.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 5급 이상 공무원
 - 나.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
 - 다.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,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라.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
- 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
 - 2.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・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-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.
- 제7조(심의·자문 요청 등)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,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·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- 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성명,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- ⑥ 심의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.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.
- 제9조(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제7조의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 -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소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. 다만,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수 있다.
 -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 - 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⑥ 소위원회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1조(소위원회 회의 소집)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·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,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- 제12조(소위원회 심의·의결)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원안채택: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
- 2. 조건부채택: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
- 3. 재심의: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 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
- 제13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,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4조(심의·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)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수당 및 검토비 등) ① 구청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구청장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,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 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2. 비용추계의 전제
- "2024년 마포구 주요 경비 편성 기준"에 따라 수당 편성
- 기술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
 - 위원회 1회 개최 시, 참석의원 10명(2시간 이상 소요) 가정
- 비용추계기간: 2024. 1. ~ 2028. 12. (60개월)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 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입	-	_	_	-	_	-	-
	소계(a)	_	-	ı	-	-	_
세출	구비	1,500	1,500	3,000	1,500	1,500	9,000
	소계(b)	1,500	1,500	3,000	1,500	1,500	9,000
□총	비용(a-b)	1,500	1,500	3,000	1,500	1,500	9,000

- 4. 재원조달 방안: 자체재원(구비) 확보
- 5. 덧붙이는 의견: 비용추계 세출은 추후 위원회 개최 횟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정재우		
연 락 처	02-3153-9752		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연도별 위원회 심의(예정) 안건 수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비고
진단심의	1	1	2	1	1	

- 위원회 1회 개최: 1,500천원 (※ 산출내역: 참석 의원 10명 × 150,000원/명)